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9 선고 2021가합53564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1. 12. 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423,845원 및 그 중 239,055,350원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2021. 7. 8.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9. 12. 27. 체결된 25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 피고 주식회사 A, B

주문 제1항과 같다.

○ 피고 C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C과 D, E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7.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39,423,845원 및 그 중 239,055,350원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3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중 '239,423,845원 및 그 중 239,055,350원에 대하여 2020. 12. 18.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양도하고, D, E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나.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강민성, 판사 정경희, 판사 정덕기

별지